

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-372호(2003. 11. 18.)로 최초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21호(2013. 12. 12.)로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81호(2014. 7. 31.)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의제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8-118호(2018. 7. 2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강동구 고시 제2020-194호(2020. 12. 1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강동구 고시 제2023-131호(2023. 8. 9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4월 16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류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명칭: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-76 일대

나. 면적: 23,083.7m²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: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봉수)

나. 주소: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, 3층(천호동, 강동빌딩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(최초)2020. 12. 7. (1차 변경)2023. 8. 9.

(2차 변경)2025. 4. 10.

5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
가. 주요내용

-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
- 보류지 매각 대상 결정 반영
-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률 개정에 따른 금액 반영

나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지하/지상)	용 도
19,901.5	4,180.54	21.01	81,994.70	248.56	3/25	공동주택(535세대) 근린생활시설(6호)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 분	주택규모별(전용면적 기준) 공급 세대수								근린생활시설 (㎡)
	계	44	47	59	74	84	108	115	
계	535	63	52	128	113	175	1	3	281.80
토 지 등 소 유 자	221	1	3	66	20	127	1	3	281.80
보 류 지	6	—	—	3	3	—	—	—	—
일반분양	263	17	49	59	90	48	—	—	—
임 대	45	45	—	—	—	—	—	—	—

라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명세(변경 없음)

구분	용 도 폐 지	신 설		
종류	도 로	계	도 로	녹 지
규모(㎡)	1,623.60	2,729.20	423.20	2,306.00

마. 권리자별 관리처분계획(변경 없음)

대 상 자	분 양				청산, 협의매수 및 기타
	소 계	공동주택	근린생활시설	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	
213	190	184	1	5	23

바. 기타 세부 변경내역은 관리처분계획변경 관계도서에 따름

6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(☎02-3425-5984) 및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02-471-9117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